

법학전문대학원 종합시험사정지침

시행일 : 2022. 06. 15.

「법학전문대학원 내규」 제50조(종합시험) 및 「법학전문대학원 종합시험위원회 지침」에 근거하여 종합시험의 합격자 사정지침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제1조(종합시험사정의 기본원칙)

종합시험의 사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응시자의 학업성취도를 종합적이고 최종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엄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제2조(시험점수 산출 방법)

- ① 공통 필수과목 논술형 필기시험 및 전문분야별 선택과목의 채점위원 수는 1인으로 한다.
- ② 합격자 결정의 기초가 되는 과목별 점수는 채점위원의 원점수로 하되 과목별 점수의 차이 정도, 문제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시험위원회에서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을 참조하여 표준편차를 적용한 조정점수를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시험의 합격 결정방법)

- ① 시험의 합격은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사례형과 기록형 포함) 필기시험의 점수를 과목당 배점에 따른 점수를 합산한 총득점으로 결정한다. 다만 각 과목 중 어느 한 과목이라도 합격최저점수(과락점수)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 ②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간의 환산비율, 선택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 내에서의 각 과목별 배점 비율 등 그 밖의 사항은 변호사시험법(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을 준용한다.
- ③ 합격점수는 과목당 과락 없이 원칙적으로 전체 평균 60점(총점 100점 만점 기준) 이상으로 하여 과목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시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다만, 수료생의 경우 별도의 기준으로 사정할 수 있다.
- ④ 부분 합격("부분 합격"이란 제1차 혹은 제2차 종합시험에서 해당 과목을 60점 이상 취득한 과목에 한하여 합격함을 의미한다.)의 인정은 제3항과 같은 기준으로 과목별로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으로 하여 과목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시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 ⑤ 부분 합격한 과목은 응시자에게 유리하게 부분 합격점을 제2차 및 제3차 종합시험에 적용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⑥ 과락기준은 과목별로 100점 만점 기준 40점 미만으로 한다.
-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질병 등의 정당한 사유로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과목을 제외한 과목의 합산점수 평균으로 사정할 수 있다.

제3조의1(위임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종합시험 합격자 사정의 방법과 절차, 결정에 필요한 관련 사항은 종합시험위원회에서 정하여 시행한다.

제4조(시행 시기)

이 지침은 2011학년도에 시행되는 종합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 이 지침 제3조(시험의 합격 결정방법) 제3항 단서는 2017학년도에 시행되는 종합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 본 지침은 2018학년도 시행되는 종합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

본 지침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2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